

##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시사점

February 26, 2024

공정위는 지난 2월 8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 가.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및 시장구조 개선

공정위는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담합 및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 감시할 계획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산업: 식음료·교복·가구·폐기물처리·금융·통신·중간재·반도체·의료기기**

관련 행위	추진 과제
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의식주·금융·통신·중간재</b> 분야 담합 집중 점검</li><li>○ <b>교복, 가구</b> 등 민생 밀접분야와 <b>학교, 건설사</b>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담합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ex: 입찰진행시 주의사항 교육, 담합 모니터링,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조치 활성화</li><li>○ <b>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b>를 위한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BRIAS) 개편</li></ul>
불공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반도체 유통·판매 시장</b>에서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 시정 ✓ 2023년 12월 완료된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결과 활용</li><li>○ <b>의료기기 거래구조 및 간접납품회사의 불공정거래관행</b> 점검 ✓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 활용</li></ul>

## 나.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 추진과 함께 플랫폼 입점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였는데, 공정위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은 분야와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업무계획에 언급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관련 산업: 숙박업·배달업·오픈마켓·음원스트리밍·동영상서비스

관련 분야	추진 과제
결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수수료율 및 긴 정산주기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b>모바일 상품권</b> 거래관행 개선</li> <li>민관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li> </ul>
입점업체 광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숙박업</b> 입점업체 광고비 경감을 위한 상생안 마련 ex: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부담완화 방안 등</li> <li><b>배달업·오픈마켓</b> 상생협력 성과 점검</li> </ul>
불공정거래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음원스트리밍 플랫폼</b>의 경쟁사업자 사업활동 방해로 인한 시장 잠식 행위 점검</li> <li><b>동영상 서비스 플랫폼</b>의 자사 온라인광고 플랫폼 이용강제 행위에 대한 점검</li> </ul>
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유형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 등 적극 시정</li> </ul>

## 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지속 보완

아울러 공정위는 ①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지원하고, ②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며, ③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도(2024. 2. 2. 뉴스레터 참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확인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산업: AI·클라우드·OTT·벤처투자(VC)·스타트업·조선·엔진·전기차

관련 분야	추진 과제
신기술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AI 등 신기술 시장 관련 경쟁제한 이슈 발굴 및 분석</li> </ul>
디지털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클라우드·OTT</b>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잠재적 법 위반 이슈 모니터링</li> </ul>
벤처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b>CVC 규제완화</b> ex: CVC 외부출자(40→50%) 및 해외투자(20→30%) 상한 확대</li> <li>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CVC 해외투자 범위 해석요건 완화 ex: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은 해외투자 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li> </ul>

<b>기업결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선·엔진, 전기차 충전</b> 등 독과점 우려가 있는 산업의 M&amp;A는 심층 심사</li> <li>◦ 구조조정 성격의 M&amp;A는 신속하게 처리</li> <li>◦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은 신고 전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적극 유도</li> <li>◦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세부사항 마련</li> </ul> <p>ex: 공정위의 경쟁제한우려 통지방식,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평가방식 등</p>
-------------	---

##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 가.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①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 및 ② **벤처기업·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에서의 감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정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산업: 건설·소프트웨어·가전·자동차부품·에너지설비·웹툰 및 웹소설**

관련 내용	추진 과제
<b>부당특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b>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b></li> </ul> <p>현행: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되더라도 행정적 제재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 개선: 현저히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이행의무가 없어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손쉽게 구제</p>
<b>하도급 대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li> </ul> <p>ex: <b>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b>(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미지급시 금융기관 등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b>발주자 직접지급제</b>(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회사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 등 중점 점검</li> </ul>
<b>불공정하도급관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금 설정을 통한 <b>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b> 등 <b>건설업</b> 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 점검 및 시정</li> <li>◦ 구두계약관행·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b>소프트웨어·생활가전</b> 업종에 대한 집중 감시</li> </ul>
<b>납품단가연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납품단가 연동제</b>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li> </ul> <p>ex: 연동지원본부(공정거래조정원)를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쪼개기계약·미연동강요 등 <b>탈법행위</b> 철저 감시</li> </ul>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부품, 에너지설비 등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 공행위 등 집중 감시</li> <li>◦ 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약관 예시: 저작권의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기간 자동연장, 저작권 분쟁시 면책 조항 등</li> </ul> </li> </ul>
-----------------	---

## 나.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가맹, 유통 및 대리점 분야 위주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사업자들은 부적절한 거래관행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에는 2024. 2. 9.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2024. 1. 16. 뉴스레터 참조](#)). 본 항목과 관련된 공정위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관련 산업: 외식업종·편의점·가구·타이어·신용카드·중고차금융

관련 내용	추진 과제
가맹 (프랜차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 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수품목 가격산정방 식 등 세부사항 구체화 가이드라인 마련 및 표준계약서 개정</li> </ul> </li> <li>◦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점검·시정 및 거래관행 자율개선 유도</li> </ul>
유통 및 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판촉비 부당전가행위 억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및 정 액 과징금 한도 상향</li> <li>◦ 유통업자 → 납품업자(본사) → 대리점 거래구조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 정행위 집중감시</li> <li>◦ 편의점·가구·타이어 등 민생업종의 불공정관행 집중감시 ex: 불이익제공, 부당한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li> <li>◦ 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및 전속대리점 실태조사를 거쳐 영업 보호 방안 마련</li> <li>◦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약관 시정 ex: 신용카드 VAN사-대리점, 중고차금융 관련 캐피탈사-대출모집인 간의 약관</li> </ul>

###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 가.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결제수단인 **모바일상품권(기프트콘)**과 **적립금(포인트)**의 사용 및 환불 관련 여건을 개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각 결제수단별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관련 산업: 온라인유통·전자상거래**

관련 분야	추진 과제
모바일상품권 (기프트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바일상품권(기프트콘)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환불금액 상향 및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ex: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금액 상향 등</li> </ul>
적립금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b>적립금</b>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li> </ul>

#### 나.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법 등 관련법령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거나 개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산업에서는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정위의 디지털 마켓 소비자 보호 정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산업: 전자상거래(SNS마켓)·인테리어·신발·화장품·게임·플랫폼**

관련 분야	추진 과제
SNS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NS 마켓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여부 점검</li> <li>SNS 숏폼(short form)에서의 뒷광고 점검 강화</li> </ul>
다크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b>숨은 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b> 등 신규 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 정비</li> <li>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등 특정 <b>업종별 전문물 실태조사</b>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자진시정 유도</li> </ul>
확률형 게임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 운영,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b>확률형 아이템의 당첨확률</b> 등을 표시할 의무 부과</li> </ul> </li> </ul>

플랫폼 (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숙박플랫폼, 온라인종합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부과</li> <li>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b>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b></li> </ul>
----------------	--

## 다.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 시정

공정위는 거래환경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서의 위법행위를 집중점검·시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는 **부당광고에 대해 밀착 감시를 통한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세부 추진 과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특히 그린워싱(Green Washing)과 관련해서는 2023. 9. 1.자로 시행된 개정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2023. 6. 16. 뉴스레터 참조](#)).

### • 관련 산업: 미용 · 성형 · 통신기기 · 건강관리기기

관련 분야	추진 과제
표시·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실증자료 생산시기를 규정하고 실증자료 미제출 시 제재 강화 추진</li> <li>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b>그린워싱(Green Washing)</b>”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li> <li><b>미용·성형</b> 분야, 스마트폰 및 안마의자 등 <b>건강관리기기</b> 성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집중 감시</li> </ul>

##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가.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 엄정 대응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감시와 규제회피 방지 및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거래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관여된 거래의 조건, 규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행위 규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관련 산업: 식음료 · 제약 · 의류 · 금융 · 벤처투자(VC)

관련 행위	추진 과제
부당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 중점 점검</li> <li>자금보충약정, TRS(총수익스왑) 등 우회적인 채무보증 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 검토</li> </ul>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벤처모태펀드 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b>CVC 관련 규제</b>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 보완 검토</li> </ul>
탈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 마련</li> </ul>

## 나.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한편, 공정위는 **동일인의 개념** 등을 포함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선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거나 경영권 승계 등으로 동일인 지정이 문제될 수 있는 회사의 담당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유의미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과 관련된 공정위의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추진 과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이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고정된 기준을 <b>GDP에 연동하는 방식</b>으로 변경</li> </ul>
동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b>내·외국인 구분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b> 하되, 그러한 <b>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b> 볼 수 있도록 개선</li> <li>기업집단 지정 시 <b>동일인 확인·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b> 운영</li> </ul>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b>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b>가 가능하도록 개선</li> <li>의결권 제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제도 취지에 맞게 법에 명시·열거</li> </ul>

## 5.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하여([2023. 6. 21. 뉴스레터 참조](#)), CP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의 구체화 및 신규 인센티브 발굴을 주요 과제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CP 관련 내용이 시행되는 2024. 6. 21. 전까지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CP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유) 세종**은 2024. 2.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제공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compliance@shinkim.com](mailto:compliance@shinkim.com)으로 소속, 연락처 및 관심 세부 분야를 기재하여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ntacts

- **최한순** | 변호사 T. 02-316-4707 E. hsochoi@shinkim.com
- **조창영** | 변호사 T. 02-316-4631 E. cycho@shinkim.com
- **김의래** | 변호사 T. 02-316-1779 E. erkim@shinkim.com
- **권순열** | 변호사 T. 02-316-4301 E. sykwon@shinkim.com
- **주현영** | 변호사 T. 02-316-1684 E. hyju@shinkim.com
- **이창훈** | 변호사 T. 02-316-4645 E. chlee@shinkim.com
- **이상돈** | 변호사 T. 02-316-4638 E. sdlee@shinkim.com
- **석근배** | 변호사 T. 02-316-4640 E. gbseok@shinkim.com
- **김주연** | 변호사 T. 02-316-1602 E. jyunkim@shinkim.com
- **성승현** | 변호사 T. 02-316-1606 E. shsung@shinkim.com
- **권오태** | 변호사 T. 02-316-4069 E. otkwon@shinkim.com
- **우승준** | 변호사 T. 02-316-4680 E. sjwo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